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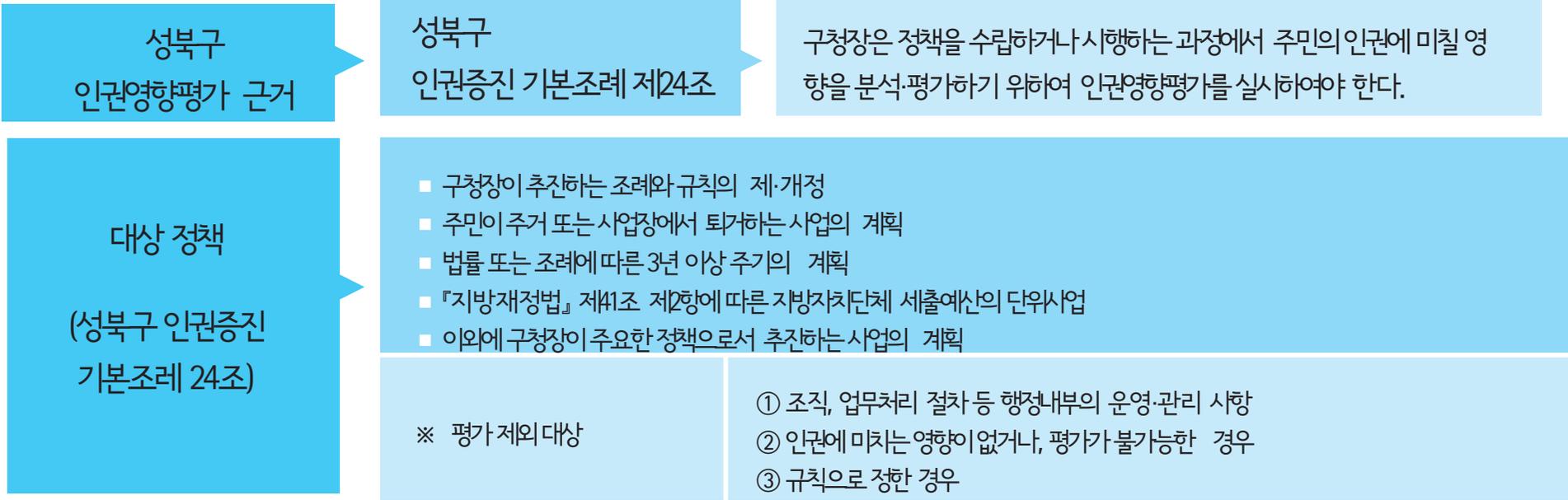
성북구청 인권센터 김정아



인권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증진 효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의 주요한 기준은 대한민 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인권관련 법률, 국제인권법 등 인권 규범이 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2012년 인권 도시 성북을 시작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애버딘시의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미국 포틀랜드 의 인권영향분석, 킹 카운티의 평등영향평가, 유진시의 트리플 바텀라인과 홍콩 코우룬시의 사회영향평가 등 도 시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권침해 예방과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이 제도는 인권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평가 원칙

- 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 평등과 비차별(equality)
: 평등성 보장
-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 정보 접근과 평가 투명성 확보
- 책임성(accountability)
: 공공의 책임과 의무 주체 명시
- 지속적인 실현의 원칙(principle of progressive realization)
: 사회적 약자 기본권 증진(최저선 높임)

평가 방식

해당 부서·인권센터 평가

인권위원회·인권센터 시민위원 평가

전문 평가단

외부 기관

조례 제·개정, 세출·세입예산, 선거사무

조례 제·개정, 공공건축, 투표소

공공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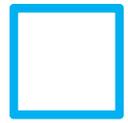
조례 규칙 제 개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세출 예산 단위사업

선거사무 / 투표소

공공건축물



조례 규칙 제·개정

근거 : 인권증진 기본조례 24조“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권영향평가는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인권센터가 제공하는 점검표를 기초로 자체 점검을 합니다. 점검 후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 합니다. 평가를 의뢰받은 인권센터는 제·개정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조문을 검토한 후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부서에 수정 의견을 줍니다. 이와 동시에 매월 개최되는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본 사안을 심의 상정합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부서 담당자의 배경 설명을 듣고 인권센터의 사전 검토 의견을 청취한 후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은“원안동의”“수정동의”“권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원안동 의”는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이 인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며“수정동의”는 인권센터의 사전 검토 의견에 따른 수정을 동의하며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권고”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고문의 형태로 성북구청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인권센터의 의견과 동일한“수정동의”나 위원회의“권고”로 해당 부서에 결정 사항이 전달되면 해당부서는 이 에 대한 수용 또는 미수용을 결정하여 인권센터를 통해 위원회에 전달하며 사안에 따라 이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평가주체	평가방식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해당 부서	위원회심의 점검표 점검

평가절차	
1	해당부서 기초 점검표 작성 ▶ 인권센터 평가 의뢰
2	인권센터 자체 평가 ▶ 인권위원회 심의 상정
3	인권위원회 심의 ▶ 원안동의, 수정동의, 권고
4	해당부서심의 결과 수용 여부 결정
5	인권위원회 수용 여부 보고

조례 규칙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현황 (2016년 1월 현재)					
자체법규 심의	권고	수용	추후수용	미수용	비고
103건	23건	17건	3건	3건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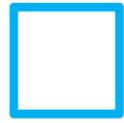
조례 규칙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현황

번호	조례명	담당부서	결과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 정책위원회 운영규칙	문화체육과	의견표명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홍보담당관	권고8호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도로시설과	원안동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환경과	원안동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일자리경제과	의견표명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부과징수규칙	세무1과	원안동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기획예산과	권고9호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자리경제과	권고12호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권고13호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원안동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디지털정보과	권고14호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교육청소년과	원안동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 상금 지급 조례	청소행정과	원안동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복지정책과	원안동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권고16호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교육청소년과	권고17호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민원여권과	원안동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마을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경제과	원안동의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원안동의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과	원안동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어르신사회복 지과	보류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재무과	원안동의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보담당관	보류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2015년

번호	조례명	담당부서	결과
1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마을담당관	권고19호
2	성북구 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	원안동의
3	성북구 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권고21호
4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시행규칙	감사담당관	의견표명
5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6	성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기획예산과	권고22호
7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자리경제과	원안동의
8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청소행정과	원안동의
9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청소행정과	원안동의
10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홍보전산과	권고23호
11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교육청소년과	원안동의
12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13	성북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도로시설과	원안동의
14	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도로시설과	원안동의
15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재무과	원안동의
16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17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여성가족과	권고24호
18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행정과	권고26호
19	성북구공유(公有)재산및물품관리조례	재무과	원안동의
20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건강관리과	원안동의

번호	조례명	담당부서	결과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건강관리과	원안동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지도과	원안동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사회적경제과	원안동의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획예산과	권고28호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어르신복지과	원안동의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여성가족과	권고29호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권고29호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도시디자인과	원안동의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어르신복지과	원안동의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무2과	원안동의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권고31호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복지정책과	권고30호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복지정책과	의견표명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급 지급 조례	주택관리과	원안동의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검토요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근거 : 인권증진 기본조례 24조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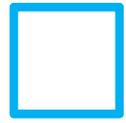
성북구는 전국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입니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는 10년 단 위로 지구단위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지방정부도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 성을 검토 후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때 지방정부 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승인, 관리처분인가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재개발 사업이 완성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 내 모든 건물을 전면 철거하여 개발하며 민간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지분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후 지분이 결정되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에서 보듯이 주거 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주민 갈등으로 인한 분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의 구성은 토지 등 소유자,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로 주체가 구분되며 이들 중에는 장애, 저 소득, 노인, 한부모가정, 이주가 정 등 사회적 약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을 둘러싼 권리는 주거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린이의 교육권, 저소득 주민의 생존권 등 인권 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인권영향 평가는 주민의 인권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 표로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 주체	평가 방식
전문 평가단 인권센터	연구, 협의, 평가표 개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재개발정비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선행된 적이 없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 문에 성북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로 구성된 평가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약 8개월 간 논의하였으며 대략의 평 가항목을 협의하여 재개발지역(1개 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시범 실시 하였습니다.

- 활동 시기 : 2014년 8월 ~ 2015년 4월
- 구성 : 관련 전문가(변호사, 주거권활동가, 관련 공무원, 성북구 인권위원 등) 11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현숙	서울시 인권옴부즈만
배정학	(주)동네목수 총무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재개발정책개혁포럼 운영위원장
전문수	나눔과 미래 간사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김철교	큐리하우징 이사
류문영	한국씨엠개발 이사
강우균	주거정비과 뉴타운사업1팀장

주요 임무

평가의범위와 목적, 평가 항목 개발

경과

- 1차 회의 (2014. 08. 22) : 인권영향평가 항목 논의
 - 2차 회의 (2014. 09. 24) : 인권영향평가 항목 세부 논의
 - 3차 회의 (2014. 10. 29) : 인권영향평가 항목 세부 논의
 - 4차 회의 (2014. 12. 11) : 인권영향평가 항목 1차 완성
 - 5차 회의 (2014. 01. 08) : 시범 조사 실시 구역 선정
 - 6차 회의 (2015. 03. 03) : 장위5구역 1차 시범조사 실시(조합원 세입자, 정비업체 등)
 - 7차 회의 (2015. 03. 17) : 장위5구역 2차 시범조사 실시(비상대책위원회 주민)
 - 8차 회의 (2015. 04. 3) : 시범조사에 근거해 인권영향평가 항목 최종 수정
- 성북구 재개발인권영향평가제도 개발은 이후 연구용역으로 수임 이관, 평가단 종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표

평가단이 개발한 평가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연구용역에 활용되었습니다.

I. 공통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비고
1. 사업 시행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반대하면 이유는 무엇인가?		정성
3. 정보소외자를 포함한 해당 구역 주민에게 정비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내용, 변경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는가?		정량
4. 동의서 징구 시 사업내용의 과장, 허위, 위압적 태도 등의 비인권적 행태는 없는가?		정성
5. 주민총회 운영 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가?		정성
6. 서면결의서 징구 시 위·변조 또는 의사결정 과정 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배제하였는가?		정성
7.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등의 선거 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		정성
8. 구청은 정보 제공을 충분히 했는가?		정성
9. 각 단계별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내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정성
10.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추진위원회·조합은 성실히 응하고 있는가?		정성

II.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1. 구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및 정보 제공을 충분히 했는가?		정성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는가?		정성

III. 조합설립 인가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조합정관을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는가?		정성

IV. 사업시행 인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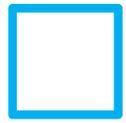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 주거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는가?(구청 지원 계획)		정량
2.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 시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가?		정성

V.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1. 분양신청 홍보 시 과도한 홍보나 과장, 허위홍보 등의 방법을 배척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정량
2. 토지 및 건축물, 영업권손실 감정평가시 해당 조합원 또는 영업권자의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실시 하였는가?		정성
3. 이주 및 철거 진행시 거주민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나 강제퇴거 시 권리침해는 없었는가?		정성
4. 손실보상 과정에서 권리침해의 요소는 없었는가?		정성
5. 이주 및 철거 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검토 되는가?		정성
6. 이주 후 공가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안과 범죄예방책은 수립되는가?		정성
7.이주 개시 후 미이주 거주민에 대한 주거권 침해요소는 없는가?		정성
8 .정비사업 전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환경은 보호되는가?		정성
9. 이주 및 철거업체의 직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실시되는가?		정량
10. 사업 진행시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 고려되는가?		정성
11. 철거로 인한 인근 거주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는가?		정성
12. 현금청산자의 퇴거와 현금청산금 협의 또는 지급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는가?		정성

VI. 준공 인가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입주 시 이동민원실 등의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정성
입주 시 사전점검 기간은 충분하며 잘 이행되고 있는가?		정성



세출예산 단위 사업

근거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예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권을 적용하도록 평가합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때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구비 3억 이상의 세부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부서와 인권센터에서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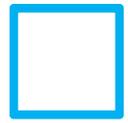
평가 대상	평가 주체	평가 방식
다음연도 세출 예산(안)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위원, 담당 직원	점검표에 의한 방식

추진 절차	
1	인권 센터 평가 대상 단위 사업 선정 ▶
2	해당 부서 점검표에 의한 자체 평가 후 의뢰 ▶
3	인권센터 · 인권위원회평가 심의 후 결과 해당부서 통보 구의회 평가서 상정 ▶
4	구의회 상정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 대상 세부사업 목록(예시)

(단위:천원)

연번	과 명	사업명	사업비
1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제작운영	416,920
2		언론및홈페이지등운영관리	899,644
3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지원	317,650
4	교육청소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2,157,610
5		친환경무상급식지원	5,597,501
6		학력신장프로그램운영	318,950
7	어르신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부담금	929,589
8		구립실버복지센터운영	659,931
9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영아반간식비지원	729,000
10		출산장려를위한출생아지원	629,450
11	문화체육과	공단위탁체육시설물관리	4,336,806
12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825,016
13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	346,871
14	도로시설과	장기미집행매수청구보상	300,000
15		구소규모편익시설(도로)설치공사	700,500
16		포장도로유지보수	413,400
17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72,097
18		제설대책추진	380,445
19	안전치수과	하수도유지관리	1,306,037
20		하천시설물관리	1,119,390
21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965,400
22		통반장 활동지원	1,678,471
23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353,440
24		공익근무요원 관리	317,991
25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	418,366
26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2,565,032
27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1,006,257
2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376,418
29		분뇨 및 정화조 관리	697,266
30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1,433,478



선거 사무 및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근거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많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투표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성북 구는 선거사무와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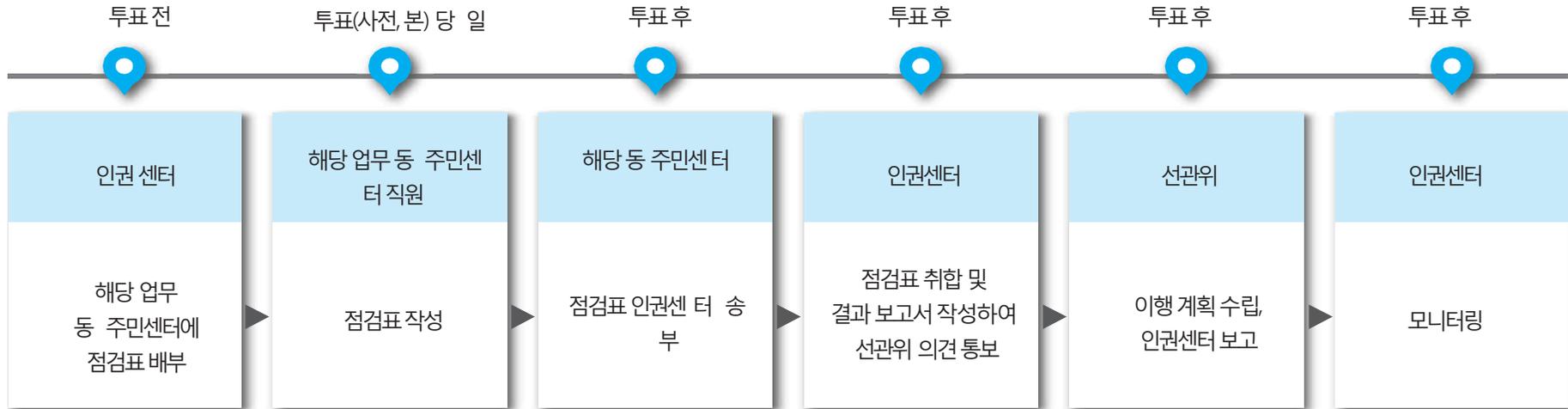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시민위원 등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거버넌스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성된 점검표에 의 해 선거사무원 스스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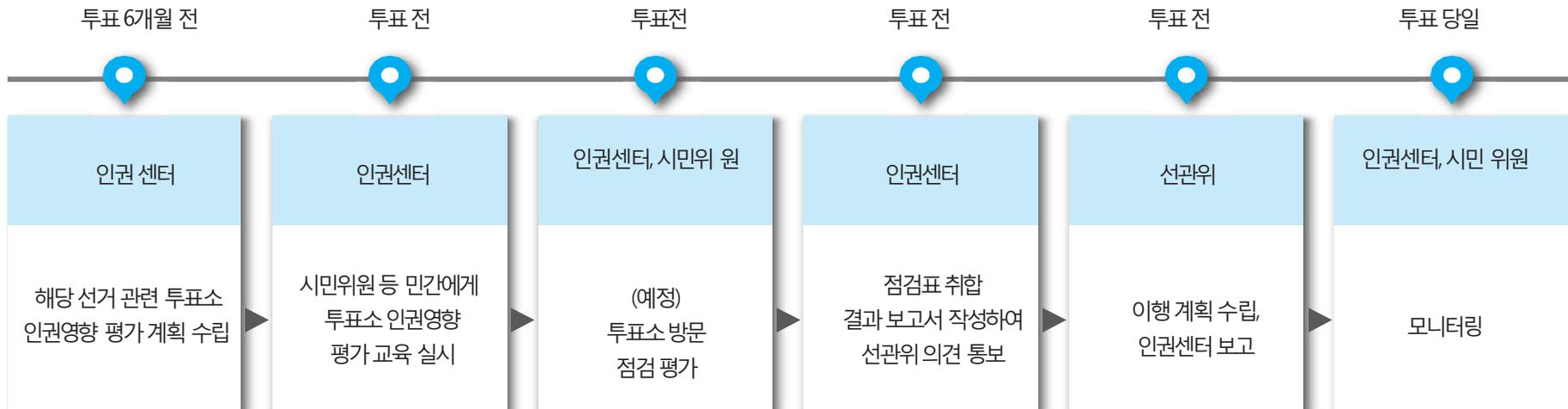
평가 주체 :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위원, 담당 직원 평가 방식 : 점검표, 현장 실사

■ 추진 절차

● 선거 사무 인권영향평가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개요

- 선거일 : 2014. 6. 4.(수) 06:00 ~ 18:00
 - ※ 사전 투표일 : 2014. 5.30. ~ 5.31. 06:00~18:00
- 선거기간 : 2014. 5.22. ~ 6. 4.
- 선거대상 :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교육감
 - 시장: 1명
 - 구청장: 1명
 - 시의원: 4명, 4개선거구
 - 구의원: 22명(비례대표 3명 포함), 8개 선거구
 - 교육감: 1명(교육의원 미선출)
- 유권자수 : 394,797명(인구 479,537명)

■ 선거사무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일시 : 2014. 4.30.(수) 14:00~16:00
- 장소 : 성북배움터
- 참석자 : 평가단 8명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표에 따라 평가단이 평가
 - 해당 부서(자치행정과)와의 질의응답 및 관련 자료 검토

■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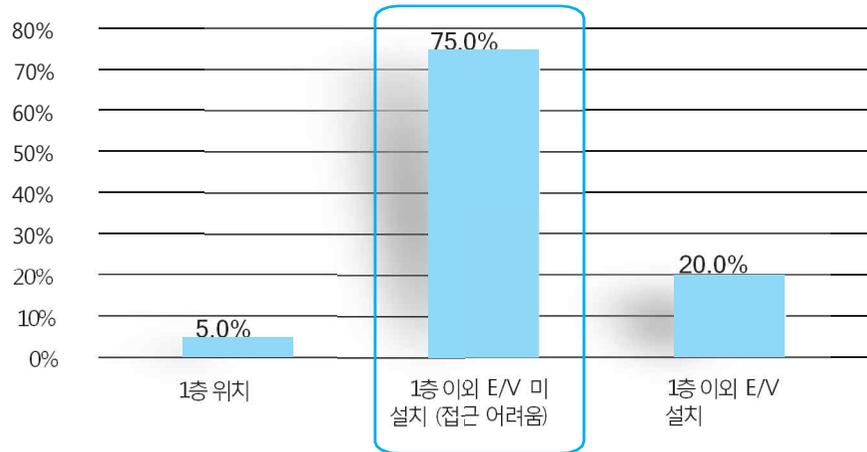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자 의견	담당부서의견	비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투표제 홍보여부	○○○	거동불편자, 노약자, 독거노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장려	거소투표제도가 존재하지만, 적극 홍보할 것임.	
	○○○	거소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소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임시방편일 뿐, 점 차 투표소 환경 개선	현실적으로 동에서 투표소 장소 변경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 개선해나갈 것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참정권 확보 방안	○○○	거동이 불편하거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동반투표 허용	기존 기표대와 다르게 접근성을 개선한 기표대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투표안내문, 거소투표안내문 등 발송시 참정권 침해여부	○○○	투표안내문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물 배부	선관위와 검토하겠음	
	○○○	투표안내문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나 문맹자들을 위해 그림으로 안내	투표절차에 대하여 투표안내문에 그림으로 안내가 되어 있음	
		등록장애인의 거동불편자가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거소투표안내 확대	향후 통반장을 통하여 안내 확대 (법적 검토 필요)	
인권을 고려한 사무 진행 여부 확인 방안	○○○	선거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 선거사무 인권지침이나 매뉴얼을 제작	선관위와 선거인권매뉴얼 제작 검토	
투·개표사무원, 참관인 등에 대한 인권대책	○○○	참관인들처럼 투표종사원들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함	
기 타	○○○	인권영향평가표의 내용이 막연하고 애매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표 작성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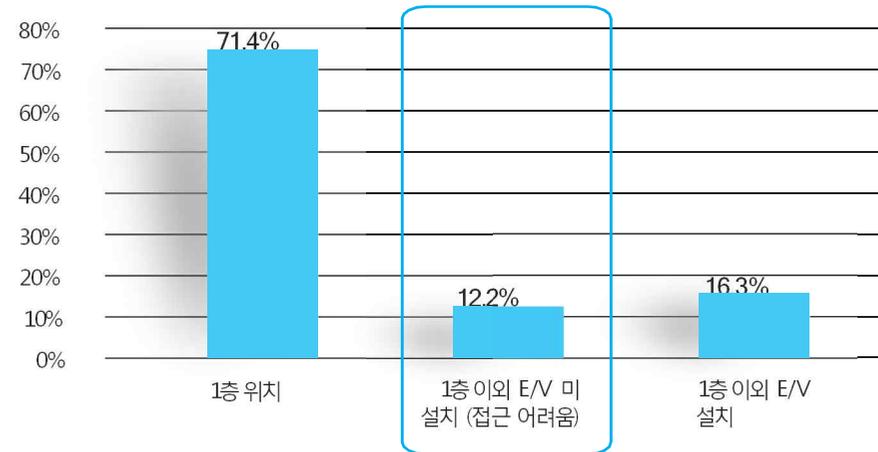
● 투표소 현황

구분	계	1층	2층이상 (E/V설치)	2층이상 (E/V미설치)	지하 (E/V설치)	지하 (E/V미설치)	비고
계	118	71	16	23	4	4	
사전투표소	20	1	4	15	0	0	
투표소	98	70	12	8	4	4	

↑ 지하 투표소 중 7개소가 주차장임.



사전투표소별 접근성 비교



투표소별 접근성 비교

↑ 사전투표소 20곳 중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소 비율이 75%로 향후 거동불편자를 위한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필요

- 1차 평가(사전평가)

- 일 시 : 2014. 4. 29. ~ 5. 12.

- 대 상 : 118개소(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 평가자 :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표(붙임)에 의거 사전평가

- ※ 선정기준 : 사전평가표에 의거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선정 (지상 1층외 E/V가 없는 곳, 지하주차장 등)

- 평가자 : 배미영위원외 7명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표에 의거 현장실사

- 2인~3인 1조로 1개조당 4개소 평가

- 2차 평가(현장평가)

- 일 시 : 2014. 5.19.(월) 09:30~12:00

- 대 상 : 12개소

- ※ 선정기준 : 사전평가표에 의거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선정 (지상 1층외 E/V가 없는 곳, 지하주차장 등)

- 평가자 : 배미영위원외 7명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표에 의거 현장실사

- 2인~3인 1조로 1개조당 4개소 평가

- 평가결과

- 대부분의 투표소(91개소)를 지상 1층에 설치하고 지상 1층 외 장소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편의 시설 설치기준(출입구 80cm이상, 보도턱 5cm 이하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 지상 1층 외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곳(27개소)은 이동기표소와 안내요명(2명 이상) 배치, 시각장애인 기표용구 등 비치하여 거동 불편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
- 다만, 사전투표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투표소 모두 동주민센터에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근무일임을 감안하여 20개소 중 15개소가 E/V가 미설치된 동주민센터 2층 이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기표소와 안내요원을 배치하더라도 거동 불편자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미흡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투표소 층과 다른 층에 설치된 경우가 있으며, 화장실 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출입구 80cm 이상)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음.
- 지하주차장을 투표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7개소로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투표사무원 및 참관인과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 대한 환경권과 안전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 선거개요

- 투표 : 2015.4.29.(수) 06:00~20:00
 - ※ 사전투표소 투표 : 4.24(금)~4.25(토) 06:00~18:00
- 선거구 : 성북구아선거구 구의원(장위3동, 석관동)
- 투표소 : 12개소(장위3동 : 4개소, 석관동 :8개소)
 - ※ 사전투표소 : 2개소
- 선거대상 : 구의원 1명(1개선거구)

인 구 수 (재외국민 / 외국인)	세 대 수 (재외국민 / 외국인)	19세이상 주민수 (재외국민 / 외국인)	비 고
53,433 (100/56)	22,810 (100/56)	45,516 (95/56)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일시 : 2015.4.15.~4.17
- 평가자 : 인권센터 직원 4명
- 방법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 의거 현장 실사
- 점검 장소 : 2층 이상의 장소이면서 승강기 미설치 건물 및 지하 층에 소재한 투표소를 위주로 집중 실사

◎ 집중 점검 투표소 평가 결과

●사전 투표소(1개소/총2개소)

투표소명	건물명(층수)	층수	장소 유형	건물 입구 경사로	승강기 유무	이동기표소 필요여부	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장소	평가 결과
장위제3동 사전투표소	서울특별시립성북 청소년수련관(로비)	4층	공공기관· 단체 사무소	○	○	×		양호

●투표소(7개소/총12개소)

투표소명	건물명(층수)	층수	장소 유형	건물 입구 경사로	승강기 유무	이동기표소 필요여부	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장소	평가 결과
장위3동 제1투표소	장위3동주민센터	3층	관공서	○	×	○	1층	3층 출입문에 약 7㎡가량의 턱이 있음. 이동기표소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요망
장위3동 제2투표소	삼익아파트 주차장	지하 1층	기타	○	○	×		양호
장위3동 제3투표소	서울특별 시립성북 청소년 수련관 (별님반)	1층	공공기관· 단체사무소	○	○	×		양호, 투표소 출입문 너비 협소
석관동 제1투표소	석관동주민센터 (회의실)	2층	관공서	○	×	○	1층	1층에 안내요원 배치 및 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석관동 제2투표소	석관동주민센터 (강의실)	3층	관공서	○	×	○	1층	1층에 안내요원 배치 및 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석관동 제3투표소	상진운수 (교양실)	2층	기타	×	×	○	옆 건물 1층	경사로 없음, 이동기표소를 설치하여도 휠체어 접근 불가로 노상 투표 불가피, 옆건물에 안내요원 배치 및 이동기표소 마련 필요
석관동 제7투표소	래미안석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층	기타	○	×	○	1층	1층에 안내요원 배치 및 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 **평가의견**

- 지상 1층외 E/V가 미설치된 곳(5개소)은 이동기표소와 안내요원(2명 이상)을 배치하고 시각장애인 기표용 구 등을 비치하여 거동 불편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비가 필요함
-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투표 장소 마련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나, 상진운수 (석관동 3투표소)의 경우, 출입구 계단 경사가 비교적 심하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기표소 및 안내요원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므로 투표 당일 충분한 안내(이동기표소 설치 안내문 부착)가 필요함
- 장위3동(투표소 1개소) 및 석관동 주민센터(투표소 2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일반 민원업무(1층)와 함께 2 층과 3층에서 투표 업무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이동기표소를 1층에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극도의 혼잡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홍보(이동기표소 설치 안내 문 부착)가 필요함
- 투표 당일 장시간 민원업무와 선거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주민센터 직원 및 투표사무원의 인원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사진**



▲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투표소 예 정장소, 환경권과 안전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 투표소 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및 거동불편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 이다.



▲ 투표소 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및 거동불편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 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개요

- 선거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일 : 2016.4.13.(수) 06:00~18:00
 - ※ 사전투표소 투표 : 4.8(금)~4.9(토) 06:00~18:00
- 투표소 : 98개소(2014년 현재)
 - ※ 사전투표소 : 20개소
- 선거대상 : 국회의원 2명(2개 선거구)
- 평가일시 : 2015.11.16.~12.18
- 평가자 : 10명(인권센터 시민위원 9명, 인권센터 직원 1명)
- 방법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 의거 현장 실사

◎ 종합 평가결과 및 의견

- 사전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되, 부득이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으로 설치 요망
- 사전투표소 중 2층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 미설치 투표소(10개소)에는 임시 기표소 마련 필요
- 임기 기표소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참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장소 마련 노력이 필요함
- 평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냉난방이 어렵고, 매연 발생, 차량 진입 등 안전권 과 건강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투표소로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 평소 거실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은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 및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 마련이 필요
-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잠겨 있거나 청소도구의 적치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투표소의 경우 아파트에 속한 노인정이나 주차장이 대부분(68.7%)으로 공동주택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

◎ 현장사진

▶ 투표소 주변 및 건물 진입 전 보도턱 및 계단으로 접근이 매우 불편한 상태임

안암동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안암동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 아파트 단지 내 차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

정릉1동 경남아파트 경로당

▶ 출입구 및 투표소 입구에 10cm² 가량의 턱이 있음. 간이 경사로 설치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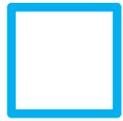


장애인 전용 화장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 문이 잠겨있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통로가 좁아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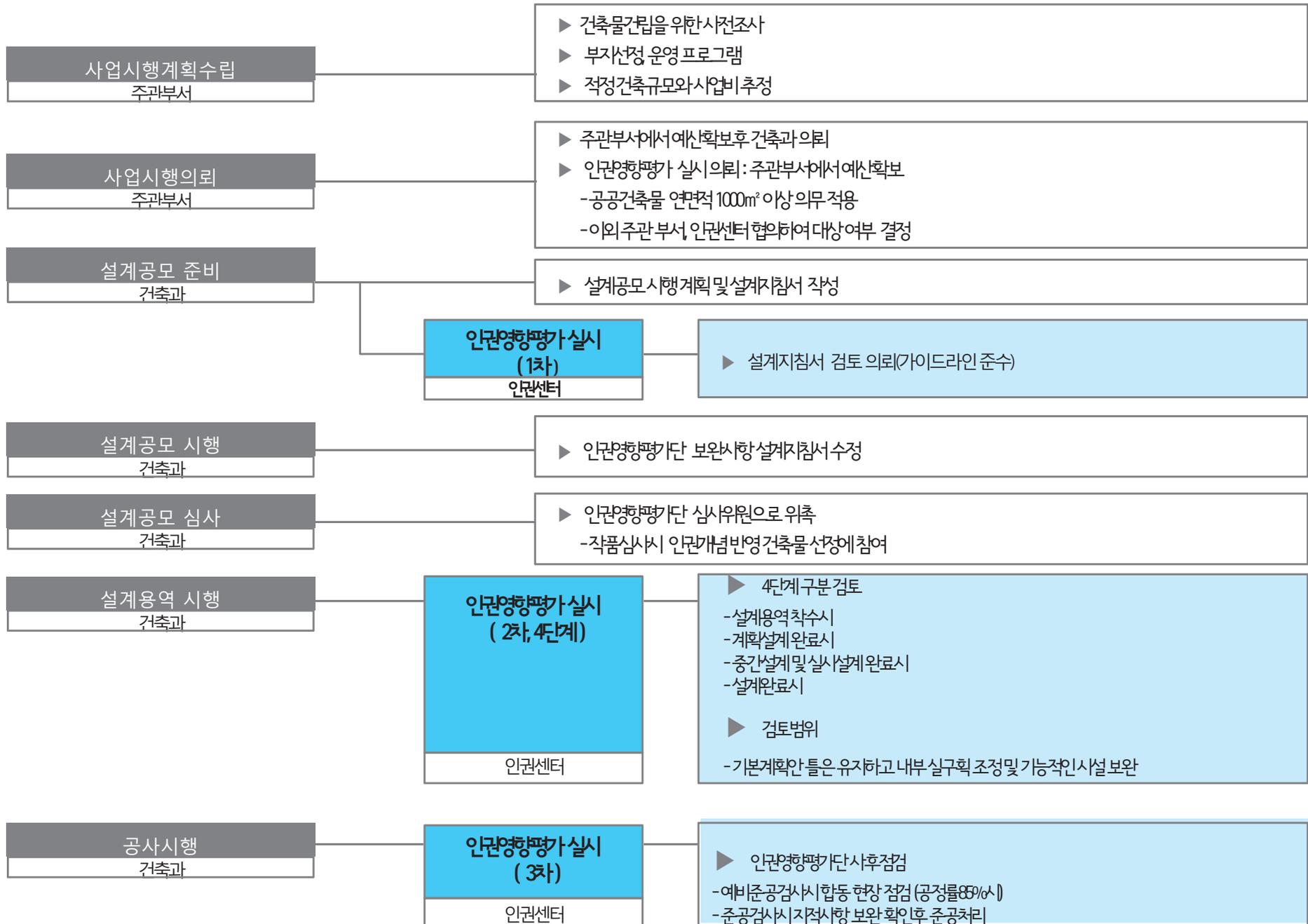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근거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정부는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주체입니다. 공공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며 사회 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서울처럼 다양한 연령과 성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에서 공공건축물은 인권 교육 의 장의 기능도 겸비하여야 합니다. 건축은 완공된 후 수정하기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인권영향평가를 건축 과정 매 단계마다 꼼꼼하게 하여야 완공 후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의 감수성으로 건축할 때 다양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건축과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평가단의 심의와 함께 인권센터 시민위원의 의견(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2조)이 적용되는 민관거버넌스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대상	<p>《 區 예산을 활용하여 신축, 증축 및 개보수하는 건축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실시 ■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도 인권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주관부서와 인권센터 협의)
평가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건축가 등 건축과 인권전문가 5인으로 구성됨) ■ 인권센터 시민위원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의견 조회,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조회 등을 조합한 전문가 심의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건립 단계별로 건축물 용도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인권 증진 및 인권침해 요소 평가 및 자문 ■ 건축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무장애(Barrier Free), 안전, 환풍 및 주변 친화, 보수 및 지속가능, 사용자체의 인권증진, 주민 참여 등

시행절차



■ 평가단 준비 회의

- 일시 : 2015년 9월 17일(목) 16:30~17:40
- 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
- 참석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관련 공무원 등 8명
- 내용 : 건축 계획 공유, 평가방법 협의, 일정 확정

■ 1차인권영향평가

- 일시 : 2015.9.30.(수) 14:30~16:30
- 장소 : 성북배움터(구청3층)
- 참석자명단 : 인권영향평가단, 건축물 설계자(정릉동청소년문화의집, 공정무역전시판매장), 공무원(건축과, 인권센터) 등 10명
- 주요의견
 - 주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배치와 공간 구성
 - 공간 구성의 가변성, 주 사용자(수요자) 중심성 확보
 - 장애인(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난간 안전사고 최소화 방안 마련
 - 독서실, 헬스장 사용 용도 재고 필요 등
 - 화장실 설치장소가 협소한 경우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통합형화장실로 구성
- 조치사항 : 인권영향평가단 개인별 의견서 송부(인권센터) ⇒ 설계자 전달(건축과) ⇒ 회신서 송부(건축과)

■ 인권센터 시민위원,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설계 의견 수렴

● 주요의견

- 마당 광장의 역할 중요함
- 유연하고 가변적인 공간
- 창의적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
- 독서실 기능 제고 필요

■ 2차 인권영향평가

● 일시 : 2015. 11. 20. (금) 09:30~11:00

● 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

● 참석자명단 : 인권영향평가단, 건축물 설계자(정릉동청소년문화의집), 공무원(건축과, 인권센터) 등 8명

● 주요의견

- 화장실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및 예각으로 인한 장애인 출입 곤란 재고
- 공연 등 행사 진행 편의성 증진 고려한 무대 위치 변경
- 시설관리노동자 휴게실 마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문이나 미닫이 문 제고(3층 방풍실)